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11. 11(월)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0월 17일 조명호의원외 7인 제출(의원발의)
나. 회부일자 : 200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2002. 11. 5)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조명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1996년3월1일 공포 시행되고 2000년7월 28일 1회 개정공포되어 16개 조문으로 구성 시행 운영되어 왔으나, 시행상 미비 점이 많아 개인 소유 전통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과 망실이 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판단하고, 새롭게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전문(全文)을 개정하여
-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보존함으로서 시사 편찬에 중거를 제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향토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은 이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로 개정함
- 이 조례에서 향토유물유적이란 향토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유물유적과 기타 민속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의미함(안 제2조)
- 전통문화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집필편찬을 하며 항토 유적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등 향토사를 연구토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5조)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천시 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함(안 제9조)
- 시사편찬소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2조)
- 시사편찬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통문화 유산보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안 제13조)
- 전통문화 보호 상 가치가 있는 향토유물유적을 시장이 지정토록 함(안 제14조)
- 지정 기준 시점은 1945년 이전 유물유적으로 하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으로 정함(안 제15조)
- 향토유적보호 관리상 필요시 시장이 보호 구역을 지정토록 함(안 제16조)
-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 고시토록 함(안 제17조)
- 유물유적을 연2회 이상 점검토록 정함(안 제21조)
- 보호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유물유적에 대하여는 시장은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2조)
- 향토사료실을 이천시에 두도록 함(안 제25조)
- 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토록 함(안 제26조)
- 관람자가 진열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는 변상토록 함(안 제27조)
-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우리시의 전통문화 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관리 보존 되도록 하고자 제명과 위원회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에 시사편찬을 돋기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의 기능을 부여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또한, 이천시에 향토사료실을 두어 운영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 시사편찬소위원회는 현행 이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어, 향후 이 조례와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향토사료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에 별도 향토사료실을 두어 운영하게 되는 조례안으로서 담당업무가 증가하게 되므로, 현행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제와 정원으로 사료실 운영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향토사료실 운영 요원이 확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